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근명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근명중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

1.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구성 한다.
2.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1.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방법)

1.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3.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4.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2/3이상 득표로 당선된다.
3.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 제10조 (위원의 임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5.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 제11조 (기능)

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제1호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 학습 기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급식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10.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현장 체험 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해 위원들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 2(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다.

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라. 운영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요청으로 「개방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12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 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14조 (의사 정족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5조 (회의 공개)

1.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와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및 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6조 (회의록 작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 제17조 (소위원회 설치)

1.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교인 고등학교 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소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한다.

**제19조 (학교 내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 처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21조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및 관리)

1.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①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②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②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 구입
  -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3.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 하여야 한다.

### 제22조 (운영세칙)

1.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된 건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 **제4조 (규정의 개정)**

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 개정 시행한다.